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36
----------	-------

발의연월일 : 2025. 7. 11.

발 의 자 : 이수진·남인순·송옥주
서미화·백혜련·전종덕
조계원·김문수·이원택
이건태·전진숙·복기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주에 대해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남녀임금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년), 65.0%(2022년), 65.3%(2023년)로 성별격차가 고착화된 상황이며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이에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하도

록 하여 남녀임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5항 중 “기재 사항, 제출”을 “기재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의 기재사항과 제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종·직무·직급·근속연수 등에 따른 고용형태별 임직원 인원 및 성비 현황
2. 직종·직무·직급·근속연수 등에 따른 고용형태별 남녀 임직원 보수 현황
3. 성별 승진 관련 현황(성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포함한다)
4.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① ~ ④ (생 략)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 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u>기재 사항</u> , <u>제출</u>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⑤ ----- ----- ----- <u>기재 사</u> <u>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u> <u>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의 기재</u> <u>사항과 제출</u> ----- ----- -----.
<u><신 설></u>	1. <u>직종·직무·직급·근속연수</u> <u>등에 따른 고용형태별 임직원</u> <u>인원 및 성비 현황</u>
<u><신 설></u>	2. <u>직종·직무·직급·근속연수</u> <u>등에 따른 고용형태별 남녀</u> <u>임직원 보수 현황</u>
<u><신 설></u>	3. <u>성별 승진 관련 현황(성별</u> <u>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포함한</u> <u>다)</u>
<u><신 설></u>	4. <u>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u> <u>비 및 성별 근속 현황</u>